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87
----------	------

2017년 2월 20일  
환경수자원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6년 12월 26일, 박준희 의원 외 9명
- 나. 회부일자 : 2016년 12월 27일
- 다. 상정일자 : 제27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7년 2월 20일 상정·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박준희 의원)

### 가. 제안이유

- 현재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적용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경유 연료 차량이 다수로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고 실제로 승용차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를 새롭게 시행되는 승용차마일리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며,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제공과 관련하여 업무추진 또는 시민들의 혼선을 야기하거나 인센티브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여 승용차 요일제 인센티브 제공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대상 선정기준에 주행거리 감축량을 추가하여 평소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실질적인 운행량 감축을 유도함(안 제2조제4호)
-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경우에도 승용차마일리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함(안 제5조)
-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혜택 제공과 관련하여 일부 혼선이 야기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하게 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혜택 중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을 위하여 필요한 이행 기준 및 이행실태 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안 제11조)

-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경우, 탈퇴 처리 및 이미 제공된 인센티브 환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제15조제4항)
- 승용차마일리지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등에 대하여도 승용차요일제와 같이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기 타 :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2) 비용추계서 : 별첨

###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 산정기준에 주행거리 감축량을 추가하고 현재 승용차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를 승용차마일리지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며,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하여 업무추진 또는 시민들의 혼선을 야기하거나 인센티브 지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보완하여 원활한 업무추진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 산정기준 확대(안 제2조제4호)

- 승용차마일리지는 2014~2016년 1, 2차 시범사업 실시 이후 금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서는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평소 주행거리가 많은 시민들에게는 불리한 구조임.

#### <차량 운행 패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예>

- 연간 5,000km 주행하는 참여자가 500km 감축 시
  - (현행) 주행거리 10% 감축으로 인센티브 지급
  - (개정) 주행거리 500km 감축으로 인센티브 지급
- 연간 20,000km 주행하는 참여자가 500km 감축시
  - (현행) 주행거리 2.5% 감축으로 인센티브 미지급
  - (개정) 주행거리 500km 감축으로 인센티브 지급

따라서 인센티브 산정기준에 주행거리 감축률뿐만 아니라 **감축량**을 추가하여 차량 운행 패턴에 따라 각기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서 주행거리가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시켜 실질적인 차량 운행량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 산정기준>

감축률(%)	감축거리(km)	인센티브 기준	
		감축 인센티브 (가입 1년차 ~)	유지 인센티브 (가입 2년차 ~)
5 이상 ~ 10 미만	500 이상 ~ 1,000 미만	2만원	1만원 <sup>1)</sup>
10 이상 ~ 20 미만	1,000 이상 ~ 2,000 미만	3만원	
20 이상 ~ 30 미만	2,000 이상 ~ 3,000 미만	5만원	
30 이상 ~	3,000 이상 ~	7만원	

2) 승용차마일리지 적용대상 차량 확대(안 제5조 단서조항)

-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지는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는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지 적용대상 차량을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승용차처럼 활용되고 있는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sup>2)</sup>의 경우 대부분 경유 사용 차량으로 휘발유 차량에 비해 더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

따라서 승용차마일리지 적용대상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를 포함시키는 것은 대기질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승용차마일리지의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 자동차의 용도를 “자동차운수사업용, 비사업용, 외교용”으로 분류하고 있는 바,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비영업용”을 “비사업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

3)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규정 명확화(안 제9조제1항제1호)

-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부과 및 할인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주차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5월 조례 개정으로 승용차요일제 이행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규정<sup>3)</sup>이 삭제('17.1.1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적용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안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이 주차장 조례의 개정 전 해당 사항을 동 조례

1) 유지 인센티브는 감축 인센티브 지급대상 선정 후 다음해에도 감축 및 동일 운행거리 유지 시 추가로 지급  
 2) '16년 12월 현재 약 10만 8천대 운행  
 3) 제7조제6항 중 “6. 시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 ~

에 명확히 규정<sup>4)</sup>함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이행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또한, 단서 조항 중 “자치구는 30% 이내에서 자체 조례로 할인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현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율이 서대문구가 20%, 나머지 자치구가 30%로 다르게 정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한 것임.

비 고	현 행	개 정
제9조 제1항 제1호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단,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제외한다. 자치구는 30% 이내에서 자체 조례로 할인율을 정할 수 있다.)

한편, 안 제9조제1항 중 인센티브 제공 대상에 “소유자”를 추가한 것은 승용차요일제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중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교통수요관리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제공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지만, “소유자”를 차량 소유자로 혼동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목적에 맞게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설물 소유자”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4) 교통유발부담금 이행기준 및 이행실태 점검 규정 신설(안 제10조제3항(별표 1) 및 제11조제3항)

-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비율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5월 조례 개정으로 승용차요일제 이행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규정이 삭제('17.1.1 시행)됨에 따라 자치구 등에서 관련 규정 적용에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 전 해당 사항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등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에 필요한 이행기준 및 이행실태 점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승용차마일리지 탈퇴 처리 및 인센티브 환수 규정 신설(안 제13조제3항, 제15조제4항)

- 안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은 부정한 방법으로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자에 대해 탈퇴 조치하고, 기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본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해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비용추계 관련

-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규모는 약 56억원 이내로 설계되었는데, 이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지방세 5% 감면제도 폐지<sup>5)</sup>에 따라

4) 단,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제외한다. 자치구는 30% 이내에서 자체 조례로 할인율을 정할 수 있다.

5) 본 조례 제9조제1항제5호 삭제('17.1.1 시행)

증가되는 세입 재원을 고려한 것임.

세부적으로 금년부터 매년 5만대의 차량을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시키고 최종적으로 참여차량을 25만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 지급액은 연간 약 43억 원 정도로 전망되고 있어,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인 비용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연차별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 계획>

(단위 : 만대, 백만원)

구 분 \ 연 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가입차량(누계)	5	10	15	20	25	25
인센티브 지급액	-	1,516	2,310	3,050	3,725	4,332

# 참 고 자 료

## □ 소요예산 추계

지 급 년 도 가 입 년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
--------------------	-------	-------	-------	-------	---------

<b>인센티브 총액(만원, A+B)</b>	<b>151,594</b>	<b>231,025</b>	<b>304,961</b>	<b>372,507</b>	<b>433,201</b>
참 여 자 (명)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인센티브 지급대상 (명, A+B)	24,750	39,418	53,247	66,101	77,945

감축인센티브 (A)	지급대상	24,750 ( - )	38,057 (9,380)	50,402 (19,310)	61,739 (29,162)	72,084 (38,593)
	소요예산	151,594 ( - )	229,664 (9,380)	302,116 (19,310)	368,145 (29,162)	427,340 (38,593)
2017년	지급대상	24,750	13,307 (9,380)	12,345 (9,930)	11,337 (9,852)	10,345 (9,431)
	소요예산	151,594	78,070	72,452	66,029	59,195
2018년	지급대상		24,750	13,307 (9,380)	12,345 (9,930)	11,337 (9,852)
	소요예산		151,594	78,070	72,452	66,029
2019년	지급대상			24,750	13,307 (9,380)	12,345 (9,930)
	소요예산			151,594	78,070	72,452
2020년	지급대상				24,750	13,307 (9,380)
	소요예산				151,594	78,070
2021년	지급대상					24,750
	소요예산					151,594

유지인센티브 (B)	지급대상	-	1,361	2,845	4,362	5,861
	소요예산	지급대상 없음	1,361	2,845	4,362	5,861
2017년	지급대상	-	1,361	1,484	1,517	1,499
	소요예산	-	1,361	1,484	1,517	1,499
2018년	지급대상		-	1,361	1,484	1,517
	소요예산		-	1,361	1,484	1,517
2019년	지급대상			-	1,361	1,484
	소요예산			-	1,361	1,484
2020년	지급대상				-	1,361
	소요예산				-	1,361

※ 감축인센티브 지급대상과 소요예산에 유지인센티브 지급자 포함됨 ( )

## 관계 법령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시장은 승용차요일제(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 하는 제도) 참여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가.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나.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3회 이상 운휴일을 위반한 경우

다. 승용차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 5. (생략)

6. 시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30%를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2016.5.19. 개정, 2017.1.1. 시행)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 하나의 시설물에서 2개 이상의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의 경감비율은 영 별표 4(비고1)의 산식에 따른다. 다만, 종사자와 이용자가 참여하는 승용차 부제 운영이 다를 경우 해당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비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의 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8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1. 승용차 요일제·5부제 및 2부제

가. 승용차 요일제·5부제 :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나. 승용차2부제 :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3. 주차장 유료화 :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제9조(교통량감축 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1. 승용차 5부제 및 2부제 (2016.5.19. 개정, 2017.1.1. 시행)
  - 가. 승용차 5부제 :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 나. 승용차2부제 : 주차면수의 10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3. 주차장 유료화 :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별표 1]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제6조제1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부제	요일제	종사자 이용자	○ 요일제 전자스티커(RFI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 차량의 운행제한	○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5부제	종사자 이용자	○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 제한 - 요일제 참여차량의 부제해당일 출입시 예외인정	
	2부제	종사자 이용자	○ 승용차번호 끝번호와 날짜의 끝숫자의 짝홀수가 불 일치하는 차량의 운행제한 - 홀수날 : 홀수차량 운행 / 짝수날 : 짝수차량 운행	○ 부담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

5.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의 : 승용차마일리지 가입대상 차량에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를 추가하는 것은 경유차 유인정책으로 비취질 소지도 있음.
- 답변 : 승용차마일리지 인센티브 지급액이 경유차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은 아님. 오히려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경유차 운행량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차량 운행량 감축과 더불어 별도의 경유차 수요 억제 정책은 병행되어야 할 것임.

6. 토론요지 : 없 음

7. 수정안 요지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제공됨에 따라 이를 목적에 맞게 “소유자”를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설물 소유자”로 수정하여 차량 소유자로의 혼동을 피하고자 함.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87
----------	------------

제안년월일 : 2017년 2월 20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 1. 수정이유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제공됨에 따라 이를 목적에 맞게 “소유자”를 “승용차요일제 참여 시설물 소유자”로 수정하여 차량 소유자로의 혼동을 피하고자 함.

## 2. 주요 골자

- 안 제9조제1항 중 “가입자 또는 소유자에게”를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또는 참여 시설 소유자에게”로 함(안 제9조제1항).

## 3. 참고사항: 생략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가입자 또는 소유자에게”를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또는 참여 시설 소유자에게”로 한다.

##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승용차마일리지”란 자동차 주행거리를 기존보다 감축할 경우 <u>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p>	<p>제2조(정의) ----- -----.</p> <p>1. ~ 3.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p><u>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차량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렌터카 포함)로 한다. 다만, 승용차마일리지제와 관련해서는 렌터카를 제외한다.</u></p>	<p><u>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차량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렌터카 포함)로 한다. 다만, 승용차마일리지는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으며, 렌터카는 제외한다.</u></p>	<p>제5조(적용대상) (개정안과 같음)</p>
<p>제8조(참여신청) ① <u>승용차요일제 참여는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나 자치구 담당부서, 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u></p> <p>② (생략)</p>	<p>제8조(참여신청) ① <u>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는 홈페이지나 -----</u>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참여신청)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개정안과 같음)</p>
<p>제9조(혜택)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u>가입자에게</u>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p> <p><u>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u></p> <p>2. ~ 3. (생략)</p> <p><u>4.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u></p>	<p>제9조(혜택) ① ----- ----- <u>가입자 또는 소유자에게</u> -----.</p> <p><u>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단,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제외한다. 자치구는 30% 이내에서 자체 조례로 할인율을 정할 수 있다.)</u></p> <p>2. ~ 3. (현행과 같음)</p> <p><u>4.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0% 감면</u></p>	<p>제9조(혜택) ① ----- ----- <u>승용차요일제 가입자 또는 참여 시설 소유자에게</u> -----.</p> <p>1. (개정안과 같음)</p> <p>2. ~ 3. (개정안과 같음)</p> <p>4.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5. ~ 6. (생략) ② ~ ③ (생략)</p> <p>제10조(이행기준) 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5.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이행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u></p>	<p>5. ~ 6. (개정안과 같음) ② ~ ③ (개정안과 같음)</p> <p>제10조(이행기준)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p>								
<p>제11조(이행실태 점검) 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11조(이행실태 점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설물의 이행실태 점검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u></p>	<p>제11조(이행실태 점검)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p>								
<p>제13조(탈퇴 신청 등) 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13조(탈퇴 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 중 고의·중과실 등 부정행방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여자는 탈퇴 처리할 수 있다.</u></p>	<p>제13조(탈퇴 신청 등)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p>								
<p>제15조(승용차마일리지)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15조(승용차마일리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중과실 등 부정행방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u></p>	<p>제15조(승용차마일리지)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p>								
<p>제16조(포상) ① 시장은 <u>승용차요일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u>을 포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16조(포상) ① 시장은 <u>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및 공무원</u>을 포상할 수 있다.</p> <p><b>[별표 1]</b> <b>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이행기준(제10조제3항 관련)</b></p> <table border="1" data-bbox="598 1854 1002 2022"> <thead> <tr> <th>프로그림</th> <th>대상</th> <th>이행기준</th> <th>최대 감면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승용차부제</td> <td>요일제 중사용자 이용자</td> <td>요일제 전자스티커(RF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 차량의 운행 제한 단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td> <td>이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td> </tr> </tbody> </table>	프로그림	대상	이행기준	최대 감면비율	승용차부제	요일제 중사용자 이용자	요일제 전자스티커(RF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 차량의 운행 제한 단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	이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p>제16조(포상) ① (개정안과 같음)</p> <p><b>[별표 1]</b> <b>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이행기준(제10조제3항 관련)</b> (개정안과 같음)</p>
프로그림	대상	이행기준	최대 감면비율							
승용차부제	요일제 중사용자 이용자	요일제 전자스티커(RF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 차량의 운행 제한 단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	이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차량은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렌터카 포함)로 한다. 다만, 승용차마일리지는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으며, 렌터카는 제외한다.

제8조제1항 중 “승용차요일제 참여는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나”를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는 홈페이지나”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가입자에게”를 “승용차요일제 가입자 또는 참여 시설 소유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단,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제외한다. 자치구는 30% 이내에서 자체 조례로 할인율을 정할 수 있다.)
4.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0% 감면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설물의 이행실태 점검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 중 고의·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여자는 탈퇴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승용차요일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을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표 1]

####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이행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경감비율
승용차부제	요일제	종사자 이용자	○ 요일제 전자스티커(RFI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 요일 부착차량의 운행 제한 단,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	○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 내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4. “승용차마일리지”란 자동차 주행거리를 기존보다 감축할 경우 <u>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u>를 말한다.</p> <p><u>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차량은 서울특별시</u>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렌터카 포함)로 한다. 다만, 승용차마일리지제와 관련해서는 렌터카를 제외한다.</p> <p>제8조(참여신청) ① <u>승용차요일제 참여는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나</u> 자치구 담당부서, 동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9조(혜택)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u>가입자에게</u>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p> <p><u>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30% 할인</u></p> <p>2. ~ 3. (생략)</p> <p><u>4.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u></p> <p>5. ~ 6.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10조(이행기준) 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11조(이행실태 점검) 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13조(탈퇴 신청 등) ① ~ 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감축률 또는 감축량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u>-----.</p> <p><u>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차량은 서울특별시</u>에 등록된 비사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렌터카 포함)로 한다. 다만, 승용차마일리지는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포함할 수 있으며, 렌터카는 제외한다.</p> <p>제8조(참여신청) ① <u>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는 홈페이지나</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혜택) ① ----- ----- <u>승용차요일제 가입자 또는 참여 시설 소유자에게</u> -----.</p> <p><u>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단,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제외한다. 자치구는 30% 이내에서 자체 조례로 할인율을 정할 수 있다.)</u></p> <p>2. ~ 3. (현행과 같음)</p> <p><u>4.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20% 감면</u></p> <p>5. ~ 6.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이행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u></p> <p>제11조(이행실태 점검)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받기 위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시설물의 이행실태 점검은「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u></p> <p>제13조(탈퇴 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 중 고의·중과실 등 부정행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참여자는 탈퇴 처리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제15조(승용차마일리지)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제16조(포상) ① 시장은 <u>승용차요일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u>, 단체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제15조(승용차마일리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u></p> <p>제16조(포상) ① 시장은 <u>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u>, 단체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p> <p><b>[별표 1]</b>  <b>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의 이행기준(제10조제3항 관련)</b></p> <table border="1" data-bbox="810 728 1428 965"> <thead> <tr> <th>프로그램</th> <th>대상</th> <th>이행기준</th> <th>최대감면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승용차부제</td> <td>종사자 이용자</td> <td>○요일제 전자스티커(RFI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 차량의 운행 제한 단,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td> <td>○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td> </tr> </tbody> </table>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감면비율	승용차부제	종사자 이용자	○요일제 전자스티커(RFI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 차량의 운행 제한 단,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프로그램	대상	이행기준	최대감면비율						
승용차부제	종사자 이용자	○요일제 전자스티커(RFI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해당요일 부착 차량의 운행 제한 단, 주차면수의 4퍼센트 이내 차량 미이행시에도 인정	○부담금의 100분의 20 범위내						